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6393
등록일자	2016.2.5.
결재일자	2016.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인영	한문석	이규형	전결 02/05 김효길		
협조자					

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운영 계획



2016. 2. .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운영 계획

정신적·신체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I 큰 거

- 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 2016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 [장애인서비스과-7422, 15.12.10.]

II 사업 개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사업기간 : 2016.1.1. ~ 2016.12.31.
- 이용대상 :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재학생은 만20세까지 지원가능 : 재학증명서 제출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단,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 지원가능

■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과 재가방문형

※ 단, 시설방문의 경우 서비스대상이 1일 2인 이하일 경우만 재가방문형 단가 적용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150%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 제공기관 현황(19개소)

제공기관명	프로그램명	서비스단가(원)	치료사수(명)
계			103
1.강남종합사회복지관	언어,미술,놀이,음악,감각	32,500	9
2.능인종합사회복지관	언어,미술,놀이	30,000	5
3.대치아동청소년발달센터	언어,심리운동,운동,인지	45,000	6
4.이화특수교육센터	언어,미술,행동,놀이,심리운동	35,000~60,000	5
5.청음회관	언어,미술	27,500	3
6.클나무언어교육원	언어	45,000	2
7.성모자애복지관	언어,음악,심리운동	27,500	3
8.오른아동청소년발달센터	언어,미술,놀이,인지,행동,심리,인지	45,000	11
9.주영언어치료교육원	언어,미술,음악,놀이,행동,심리	44,000~55,000	6
10.어울림운동발달센터	음악,행동,놀이,심리	31,420	2
11.충현복지관	언어,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27,500	7
12.파랑새아동청소년연구소	언어,놀이,인지	44,000	8
13.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	언어,행동,놀이,심리	55,000	6
14.강남연세소아청소년상담센터	언어,놀이	40,000~44,000	5
15.맘편한 심리 상담센터	언어,미술,행동,놀이,심리	60,000	4
16.신경혜발달상담센터	언어,미술,놀이,심리,특수체육,인지	40,000~45,000	11
17.아이플레이	심리운동	50,000	2
18.쿵아동발달센터	언어,음악	40,000	2
19.뛰어놀자발달센터	심리.운동,언어치료	40,000	6

언어발달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1.1. ~ 2016.12.31.

■ **대상연령**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과 재가방문형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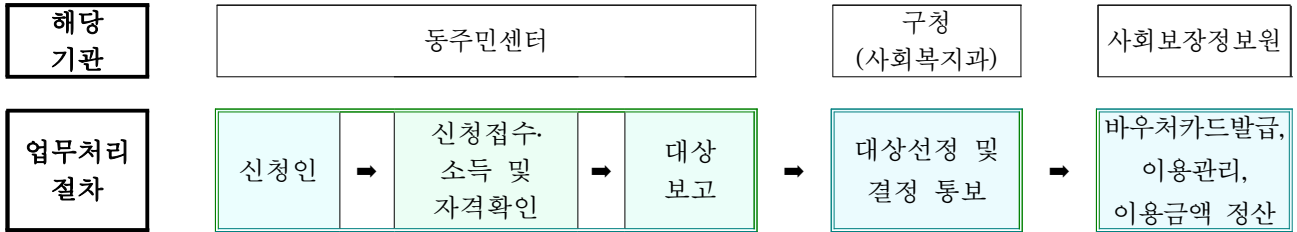
■ 제공기관 현황(4개소)

제공기관명	프로그램명	서비스단가	치료사수
계			14
1. 쿵아동발달센터	언어치료	40,000	2
2. 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	언어치료	55,000	6
3. 청음회관	언어치료, 독서지도	27,500	4
4. 클나무언어교육원	언어치료	45,000	2

III

사업 추진 절차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류 : 본인 및 부모,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분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발달재활사업 신청서 : 대상자가 만 5세 이하일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로, 예견되는 장애유형과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여부에 대한 소견이 명기된 진단서에 한하여 인정

■ 예산집행 절차

예산교부(서울시) ⇒ 간주처리 요청(사회복지과) ⇒ 사업비 예탁(사회보장정보원)
⇒ 제공기관별 비용지급 및 정산(사회보장정보원)

■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업무 수행 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위탁업무 :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업무
-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 분기마다 각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서비스 비용을 지급

IV 소 요 예 산

■ 발달재활서비스

- 소요예산 : 564,760천원(국비50% 282,395천원, 시비50% 282,395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언어발달지원사업

- 소요예산 : 6,254천원(국비50% 3,127천원, 시비50% 3,127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V 행 정 사 항

- 분기별 사업 실적보고 철저
- 연 1회 이상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 붙임 : 1. 소득 판정기준표**
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별첨 1 :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823	1,647	2,470	25,700	50,632	76,004	4,388	29,738	71,845	27,133	51,189	76,500
2인	1,582	3,164	4,746	48,411	96,971	145,527	26,759	102,794	162,602	48,928	98,024	147,696
3인	2,254	4,508	6,763	69,012	139,418	208,766	60,130	156,136	230,162	69,940	141,452	213,802
4인	2,580	5,161	7,741	79,373	158,610	242,453	77,935	177,161	262,525	80,113	161,332	251,447
5인	2,723	5,445	8,168	83,609	166,694	251,447	84,117	185,270	271,204	84,591	169,508	261,486

※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별첨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참조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함,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별첨 2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 2016년도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3,000	25,700	4,388	27,133
		27,383	4,675	28,910
2인	1,582,000	48,411	26,759	48,928
		51,582	28,512	52,133
3인	2,254,000	69,012	60,130	69,940
		73,532	64,069	74,521
4인	2,580,000	79,373	77,935	80,113
		84,572	83,040	85,360
5인	2,723,000	83,609	84,117	84,591
		89,085	89,627	90,132
6인	2,865,000	88,428	89,348	89,118
		94,220	95,200	94,955
7인	3,007,000	92,354	96,689	93,558
		98,403	103,022	99,686
8인	3,149,000	96,971	102,794	98,024
		103,323	109,527	104,445
9인	3,292,000	101,427	109,169	102,614
		108,070	116,320	109,335
10인	3,434,000	106,359	115,923	107,283
		113,326	123,516	114,310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 2016년도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47,000	50,632	29,738	51,189
		53,948	31,686	54,542
2인	3,164,000	96,971	102,794	98,024
		103,323	109,527	104,445
3인	4,508,000	139,418	156,136	141,452
		148,550	166,363	150,717
4인	5,161,000	158,610	177,161	161,332
		168,999	188,765	171,899
5인	5,445,000	166,694	185,270	169,508
		177,612	197,405	180,611
6인	5,730,000	175,489	194,298	178,515
		186,984	207,025	190,208
7인	6,014,000	184,638	204,479	188,050
		196,732	217,872	200,367
8인	6,299,000	195,451	216,152	199,557
		208,253	230,310	212,628
9인	6,583,000	203,881	225,118	208,766
		217,235	239,863	222,440
10인	6,868,000	213,802	235,598	219,775
		227,806	251,030	234,170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 2016년도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70,000	76,004	71,845	76,500
		80,982	76,551	81,511
2인	4,746,000	145,527	162,602	147,696
		155,059	173,252	157,370
3인	6,763,000	208,766	230,162	213,802
		222,440	245,238	227,806
4인	7,741,000	242,453	262,525	251,447
		258,334	279,720	267,917
5인	8,168,000	251,447	271,204	261,486
		267,917	288,968	278,613
6인	8,595,000	273,128	292,614	286,652
		291,018	311,780	305,428
7인	9,021,000	286,652	306,016	302,654
		305,428	326,060	322,478
8인	9,448,000	302,654	322,239	324,566
		322,478	343,346	345,825
9인	9,875,000	302,654	322,239	324,566
		322,478	343,346	345,825
10인	10,302,000	324,566	342,813	350,430
		345,825	365,267	373,383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